

성남소방서,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

성남소방서(서장 임국빈)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'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'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.

이 제도는 야간,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에 보완이 필요하고,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.

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만5000㎡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며,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한다.

또한, 공동주택(기숙사)·숙박·의료·노유자 시설·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.

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"건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,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"고 전했다

소방서 관계자는 "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 벌금,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되며, 문의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031-720-0313으로 문의하면 된다"고 말했다.

/김태현 기자